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13 발의연월일: 2024. 3. 21.

발 의 자: 박덕흠 · 서천호 · 김예지

구자근 • 박정훈 • 이종배

강승규 • 고동진 • 김정재

김선교 · 김용태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 지원 의무 기간을 '보호 종료 후 5년'으로 규정하고 있음. 이는 사실상 23세까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약을 두고 있으며, 이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20대중·후반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따라서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, 지원 기간을 '보호 종료 후 10년'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8조제2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8조제2항제3호 중 "5년이"를 "10년이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8조(자립지원) ① (생 략)	제38조(자립지원) ① (현행과 같		
	<u></u> 아		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	②		
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		
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		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		
3.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	3		
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			
시설에서 퇴소한 지 <u>5년이</u> 지	<u>10년이</u>		
나지 아니한 사람			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